
입 법 정 보

2019-7호



목 차



1.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4
2.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5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6
4.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7
5. 대학도서관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9
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7. 향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9
8.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
9.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
1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1
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
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
1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13
14.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3
15.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4
1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4
1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4
18.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5
19.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	16
2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6
21.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7
2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7
2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8
24.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8
2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9
2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9
27.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9
2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20
29.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20
30.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21
3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23
32.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24

3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25
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25
3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25
36.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26
37.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26
38.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7
3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28
4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28
41.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29
4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29
4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0
44.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31
45.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31
46.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32
47.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33
48.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4
4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5
5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6
51.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36
5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	37
5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37
5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8
5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8
5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39
5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39

정부입법 예고

1.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9. 3. 25.
- 마감일자 : 2019. 5. 7.
- 보호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호수의 이전 및 지정·지정해제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보호수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및 산불위기경보의 발령권자를 산림청장으로 일원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16197호, 2019. 1. 8. 공포, 7. 9. 시행 및 법률 제16230호, 2019. 1.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보호수의 이전대상 사업과 지정·지정해제 절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보호수의 피해로 인한 지원 절차 마련과 산불위기경보의 발령권자를 산림청장으로 일원화함에 따른 산불위기경보의 발령기준 정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산림보호구역에서 광물의 탐사·시추시설 설치 허용(안 제3조제2항제15호)
 - 1) 산림보호구역의 해제 사유인 광물의 탐사·시추시설의 설치를 행위제한에서도 허용하여, 광물의 탐사·시추 결과 광물 미 발견 시 산림보호구역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나. 산림보호구역에서 6.25 전사자유해 조사·발굴 허용(안 제3조제2항제16호)
 - 1) 산림보호구역에서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전사자의 유해를 조사·발굴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다. 보호수를 이전할 수 있는 사업(안 제7조의2)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의 사업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 보호수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함

라. 보호수의 지정해제 절차 등 규정(안 제7조의3)

- 1) 보호수 지정해제 시 관리번호, 수종, 소재지, 지정해제 사유 등과 이의신청, 공고 및 고시에 관한 방법을 정함

마. 보호수 심의위원회 구성 등(안 제7조의4)

- 1) 보호수의 지정·지정해제 등을 하는 경우 보호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정수, 위원의 임기 및 의결 정족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안 제7조의5)

- 1) 보상대상 보호수의 범위를 정하고, 보호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관련자의 보상 신청과 시·도지사 등의 피해사실 조사 등을 규정함

사. 산불위기정보의 발령권자 산림청장 일원화에 따른 정비(안 제23조제1항)

- 1) 산불위기정보의 발령권자를 산림청장으로 일원화에 따른 산불경보의 발령기준 정비

아. 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조문 정리(안 제30조제1항)

- 1) 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운영 할 수 있는 법률조항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정리

2.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9. 3. 25.
- 마감일자 : 2019. 5. 7.

- 보호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지정해제 절차 및 행위제한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16197호, 2019. 1. 8, 공포, 7. 9, 시행)됨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 시 공표방법과 보호수 지정·지정해제 시 공고사항과 이의신청 방법, 보호수에 대한 행위제한의 예외사항을 규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호수 지정 시 알려야 하는 대상(안 제10조의5제1항)

- 1) 보호수 소유자 외 보호수가 서 있는 토지의 사용·수익권자와 보호수가 소재하는 마을의 통·리장을 고지대상으로 함

나. 보호수 지정 시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안 제10조의5제2항)

- 1) 보호수가 서있는 토지 소유자의 성명·주소나 지정 년월일, 보호수 지정시 법률적 제한사항과 향후 관리계획을 공고하도록 함
- 다. 보호수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안 제10조의5제3항)

- 1) 보호수의 지정에 따른 이의신청서 제출 방법, 이의신청 기간, 공고·고시방법 등을 정함

라. 보호수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안 제10조의6)

- 1) 학술적 연구, 후계목 육성 및 보호수 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보호수에 대한 행위제한의 예외사항을 규정함

마. 보호수의 지정해제의 고시 등(안 제10조의7)

- 1) 보호수 지정해제 시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9. 3. 25.
- 마감일자 : 2019. 5. 7.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농어촌학교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법적 근거 신설(제23조 제2항)에 따라 농어촌학교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 및 체험학습비 등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정하기 위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농업·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에 관한 규정 신설(제32조의2)에 따라 수집·저장·가공·분석 대상 ‘농업·농촌공간정보’를 구체화하고, 위탁기관 지정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등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농어촌지역 학교 학생 교육 지원 대상 및 기준 (안 제10조의2 신설)
 - 1) 농어촌지역 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대상 및 기준을 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기준을 마련
- 나. ‘농업·농촌 공간정보’ 구체화 (안 제12조의2 신설)
 - 1) 관계기관이 수집·생성·가공한 정보 중 농업·농촌과 관련된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지리학적 위경도, 주소 등 위치정보를 포함한 정보로 정의
 - 2) 농경지 전자지도 정보, 농경지 영상정보, 농업경영체, 스마트팜·방역·농식품사업·토지·영농·재해·유통·안전 관련 정보 등을 대상 정보로 함
- 다. 전자적 자료제공 근거 마련 (안 제12조의3 신설)
 - 1)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 또는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연계 비용 지원 근거 신설
- 라. 위탁기관의 지정 (안 제12조의4 신설)
 - 1)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관리 기관 지정 및 비용 지원 근거 신설
- 마. 고유식별번호 처리 근거 마련 (안 제18조제1항제8호 신설)
 - 1) 농업·농촌 공간정보 수집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하여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4.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9. 3. 25.
- 마감일자 : 2019. 5. 7.

- 작년 강릉펜션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들의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택에서 하는 사업이란 특성때문에 농어촌민박의 안전시설 설치 기준은 다른 숙박업에 비하여 완화되어 있는 상태임. 그러나 농어촌민박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 관리기준과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부분에 있어서 일반 숙박업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안전관리기준 및 시설 기

준과 안전교육 비중을 강화하여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어촌민박이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가. 신고 전 서비스·안전 교육 수료 의무화(안 제49조제1항제3호신설)

나. 소방·안전교육시간 연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안 제49조의2 제2항 개정)

다.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일정 공지(안 제49조의2제3항 개정)

라.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강화(안 별표3 개정)

1) 객실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의무화

2)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피난유도표지를 설치하고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피난유도등 설치

3) 다층건물의 효과적인 대피를 위하여 150제곱미터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의 건물에는 3층부터 객실마다 완강기를 설치

4) 난방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설치 규정 신설

마.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안전기준 개정(안 별표3의2 개정)

1)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 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 안전 기준 추가

2) 새롭게 설치 의무화된 자동확산소화기, 휴대용비상조명등, 일산화탄소경보기 등에 대한 관리 의무 규정

바. 농어촌민박사업 신고서 개정(안 별지 제75호 서식 개정)

1) 신고 내역에 새롭게 추가된 안전시설 현황과 신고 시 제출서류에 서비스·안전교육 수료증 추가

사.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 개정(안 별지 제80호서식 개정)

1)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난방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현황을 기재하도록 함

2) 새롭게 설치 의무화된 자동확산소화기,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유도등(표지), 완강기 관련 내용 추가

3) 난방안전시설의 경우 환기시설설치 여부, 가스누설경보기,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현황 기재

5. 대학도서관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9. 3. 25. ● 마감일자 : 2019. 5. 7.
- 대학도서관진흥법이 일부 개정(제15953호, ‘18.12.18. 공포, ’ 19.6.19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대학도서관 실태조사의 범위는 소장 및 구독자료 현황, 시설 및 인적자원, 예산 및 결산 등으로 함(안 제8조 제1항 신설)
 - 나. 실태조사의 종류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하고, 정기조사의 주기는 연 1회로 함(안 제8조 제2항 신설)
 - 다. 실태조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학술정보통계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점검 또는 현장점검을 할 수 있음(안 제8조 제3항 신설)
 - 라. 교육부장관은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안 제9조 조문이동)

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9. 3. 25. ● 마감일자 : 2019. 5. 7.
- 모든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제를 폐지하여 등록제로 완화하고, 기간·별정통신사업자 구분을 통합하여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신할 새로운 규제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비통신사업자의 부수적인 서비스 제공은 기간통신사업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7.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9. 3. 26. ● 마감일자 : 2019. 5. 7.
- 「항로표지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286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됨에 따라, 항로표지 설치허가 관련 관계기관 협의기한 설정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항로표지 설치허가 관련 관계기관 협의기한 설정(안 제3조제4항)

1) 항로표지 설치·관리 허가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의견 회신기한을 8일 이내로 정함(협의간주)

나. 법률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및 오자 수정(안 제12조 및 안 제17조)

1)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정관에 관한 사항이 항로표지법에 규정되어 시행령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령 내 오자 수정

8.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9. 3. 26.

• 마감일자 : 2019. 5. 7.

○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에 관한 연도별 추진계획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072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추진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외소득활동 지원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및 전년도 추진실적 제출·평가 절차 정비(안 제4조제2항)

1) (제·개정 주요내용) 농외소득활동 지원에 관한 다음해의 연도별 추진계획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하던 것을 추진계획에 따른 당해 연도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2) (제·개정 사유) 농외소득활동 지원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제출 절차 마련

9.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9. 3. 26.

• 마감일자 : 2019. 5. 7.

-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도록 「외식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409호, 2018.9.18. 공포, 2019.3.19.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기본계획·시행계획의 공표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사업이 '16년도에 종료된 이후 우수 외식업 지구의 운영 평가에 따르는 재정적·행정적 어려움이 있어, 평가방식을 연1회 의무평가에서 정기적인 확인 방식으로 완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른 공표(안 제1조의2 신설)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1개월 이내에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표하도록 함

나. 우수 외식업 지구 운영상황평가 방식 변경(안 제9조 개정)

- 1) 우수 외식업 지구의 운영상황을 연1회 이상 의무평가 방식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및 평가기준 고시 조항 삭제

1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9. 3. 26.

• 마감일자 : 2019. 5. 7.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채무의 연체가 발생한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함. 일단 연체가 발생한 이후에는 채무자의 신용등급 하락과 채권 추심 부담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상환능력이 더욱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회복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소득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향후 연체발생이 우려되는 채무자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의 신청 요건에 현행 ‘연체의 발생’ 외에 ‘연체발생 우려’를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신청요건 완화(제53조제1항제1호 개정)

-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가능요건에 ‘채무자가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것’을 추가함

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3. 27. ● 마감일자 : 2019. 5. 7.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에서 피해보상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위임하도록 한 근거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법제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지자체에서 조례를 마련할 수 있는 위임 조항 신설(안 제7조제3항)
 - 1) 현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고시의 위임조항에 따라 225개 지자체가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대한 지자체 조례를 두고 있어, 이를 법령에 반영함
 - 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철거 훼손 및 관리주체 변경 신고 등 사후 관리에 관한 고시 내용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 마련(안 제7조제4항)
 - 1)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고시에 규정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사후관리 규정을 법령에 반영함

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9. 3. 27. ● 마감일자 : 2019. 5. 7.
- 혁신·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창업·벤처기업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허용하고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을 도입하며, 계약상대방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하여 계약분쟁조정위원회 대상 금액 및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계약의 공정성·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가능 조항에 대한 심사를 도입하고,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 예고일자 : 2019. 3. 27.
 - 마감일자 : 2019. 5. 7.
- 안전검사 유효기간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안전검사 면제사유인 운항정지신청제도를 신설하여 국민 편의 제공 및 규제합리화 도모
- 주요내용
- 가. 안전검사 유효기간 산정방법 개선 (안 제26조제6항)
- 1)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유효기간 기산일을 “종전 검사증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에서 “해당 안전검사증을 발급받은 날” 로 개정
 - 2) 검사기한 만료일 30일 이후 검사 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유효기간 기산일을 종전 검사증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정할 경우 유효기간이 짧아져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국민 부담을 완화
- 나. 안전검사 면제항목 중 운항정지 신청제도 신설 (안 제27조제1항)
- 1)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가 일정기간 운항하지 않을 예정인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운항정지 신청제도를 마련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여 대국민 편의를 제고

14.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9. 3. 27.
- 마감일자 : 2019. 5. 7.
- 「비료관리법」 개정(법률 제16122호, ‘18. 12. 31. 공포)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한편, 비료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위해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비료 가격표시 위반 과태료 세부규정 마련(안 별표 4. 2. 개별기준 사목 신설)

- 1) 비료관리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비료의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한 세부적으로 과태료를 정함

15.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3. 27. • 마감일자 : 2019. 5. 7.
- 최근 국내외 불법 비행 드론이 출몰함에 따라 활주로 폐쇄 등 드론으로 인한 공항마비 사태가 빈번해짐에 따라 미승인 드론의 공항침입 적기 대응을 위하여 공항구역 내 불법 비행드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을 위하여 승인이 필요한 관제구역·통제구역·주의구역 중 관제구역에서의 미승인 비행의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상향 조정(안 별표5)

1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9. 3. 28. • 마감일자 : 2019. 5. 7.
-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 세액 산출 요건 및 법인지방소득세 추가 납부 사유,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등 「지방세법」(법률 제16194호, '18.12.31. 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지식산업센터의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건축 중이거나 준공 후 사용하는 토지로 명확화하고,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소득세 이자상당액의 계산 시 이자율을 납부불성실 가산세율과 동일하게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9. 3. 28. • 마감일자 : 2019. 5. 7.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6295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으로 시행령에 있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시행령의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법률에서 시설의 개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 개별 기준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함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7조)

- 1)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구성 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함

나.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허용(안 제19조의2)

- 1)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타법과 조화 및 영세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일부 위임(안 제20조)

-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준수여부 등에 대한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라.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개선(안 별표2)

- 1) 시설개수 명령 미이행시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중복으로 부과하였으나, 이는 과잉제재의 우려가 있어 법률에서 시설의 개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였음. 이에 따라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함

18.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9. 3. 28.
- 마감일자 : 2019. 5. 7.

-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근거 마련 및 간척농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농지 일시사용허가 대상포함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6073호, 2019. 7. 1. 공포·시행)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범위와 방법 및 농지 일시사용기간 설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확대 등 농업진흥구역의 규제를 완화하여 농업진흥구역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전자도면 사용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9.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9. 3. 29.
 - 마감일자 : 2019. 5. 8.
- 「도서개발 촉진법」상 연도별 사업계획은 매년 도서개발 심의위원회
- *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0조에 근거한 포괄보조금 도입('09.4월) 이후 예산의 세부내역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어,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별도 심의가 불필요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함
- 주요내용
- 가. 연도별 사업계획 확정에 대한 도서개발심의위원회 심의규정 삭제
- 나. 도서개발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서 연도별 사업계획 삭제

2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9. 3. 29.
 - 마감일자 : 2019. 5. 8.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지역의 해양수산 현안문제 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법률 제16288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개정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법률 제16288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에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 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 3항 삭제)

나.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기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다.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평가, 지정취소 및 청문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자에게 위임함(안 제21조제1항)

21.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9. 3. 29.

● 마감일자 : 2019. 5. 8.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법률 제16288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2조 신설)

2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9. 3. 29.

● 마감일자 : 2019. 5. 8.

○ 환경보전해역, 특별관리해역 등 환경관리해역 지정·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역의 여건 변화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범위 조정 및 해제 등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시의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현재 시행령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환경관리해역의 지정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16215호, 2019. 1. 8. 공포, 2019. 7. 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보전해역의 지정, 해제, 변경 고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경유에 대한 방제

분담금 부과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등 방제분담금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안 제9조)

- 1) 해양수산부장관이 환경관리해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환경관리해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환경관리해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일자, 환경관리해역의 위치·면적 및 범위 등을 고시하도록 규정

나. 경유에 대한 방제분담금 부과기준(별표 17)

- 1)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류보다 방제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경유의 경우 유류 수령량 100 l 마다 2.76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

2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일자 : 2019. 3. 29.
- 마감일자 : 2019. 5. 10.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산업 등의 창업제외업종을 규정하고,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19.3.6.)에서 발표한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벤처펀드 출자규제 완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며, 재창업 지원사업의 개인정보취급 위탁 근거 마련, 규제개선 차원에서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요건완화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4.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3. 29.
- 마감일자 : 2019. 5. 9.

-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시 도입된 장애인 보조공학사 국가자격 시험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 보완 필요

2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3. 29. ● 마감일자 : 2019. 5. 8.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18.12.27.)하여, 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 법령 개정 필요
- 주요내용
 - 가.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 이사회, 사업연도 등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정(시행령 안 제21조의4 ~ 제21조의7)
 - 1) 정관 기재 사항,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이사회 구성 등 규정

2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3. 29. ● 마감일자 : 2019. 5. 8.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18.12.27.)하여, 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 법령 개정 필요
-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 자활기업 기준 완화(시행규칙 안 제31조)
 - 1) 총 고용인원 5인 이상, 업력 3년 이상인 법인 형태의 자활기업이 취약계층*을 전체 고용인원의 30% 이상 고용한 경우, 지원요건 충족

27.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3. 29. ● 마감일자 : 2019. 5. 8.
- 「아동복지법」 개정(법률 제15889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자 추가 등(안 제26조의5제1항 개정, 제2항 신설, 제3항 개정)
 - 1)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치를 경찰관서에 요청할 수 있는 자로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와 아동
관련기관 취업자들을 추가

2)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및 회신을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추진 할 수 있음을 명시

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서식 신설(시행규칙안 별지 제12호
의2서식 및 별지 제12호의7서식 신설)

1)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아동관련기관 취업자들이
본인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를 직접 신청할 경우,
신청서 및 회신서 서식을 신설

2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9. 3. 29.
- 마감일자 : 2019. 5. 8.

○ 2016년 수락산 살인사건부터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까지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 내 관리 감독 시스템 미비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에,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 안전 도모를 위해 형집행이 종료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적 치료 제도를 마련하고, 치료명령제도의 활성화 도모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입원 치료 연계, 조사 절차 개선 등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9.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9. 3. 29.
- 마감일자 : 2019. 5. 8.

○ 국선변호인 선임 대상자를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체포된 피의자(이하 “체포피의자”)로 확대하여, 체포피의자의 형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 체포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이하 “피의자국선변호인”) 선정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

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구조’의 정의 규정 일부 수정(안 제2조)

- 1) 현행 「법률구조법」은 ‘법률구조’의 정의를 ‘법률상담, 소송 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으로 정하고 있음
- 2) ‘법률구조’ 정의에 ‘형사절차상 변호인의 조력’을 추가하여, 공단이 피의자국선변호인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나. 피의자국선변호인 운영 관련 사항 규정(안 제19조의2)

- 1) 공단은 피의자국선변호인을 선발·위촉하고, 매년 피의자국선변호인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 2) 공단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피의자의 체포 통지를 받은 경우 피의자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이를 해당 수사기관과 체포피의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 3) 피의자국선변호인의 업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 업무수행 내용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접견, 피의자신문 참여, 의견 개진 등의 사항으로 정하도록 함
- 4) 피의자국선변호인의 자격, 명부 통보 방식, 선정, 고지 절차 및 피의자국선변호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피의자국선변호관리위원회 신설 및 업무범위 등 규정(안 제19조의3)

- 1) 피의자국선변호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피의자국선변호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를 설치
- 2) 피의자국선변호인 선발·평가 등 관리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0.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9. 3. 29.
- 마감일자 : 2019. 5. 8.

○ AI 방역 종합대책(‘17.9)의 법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6115호, 2018.12.31일 공포)됨에 따라 법

를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AI·구제역 방역 보완방안(' 18.9)에 따른 방역 대책 추진에 필요한 근거 규정 마련 및 그간 개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자체에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 규정 및 해당 사항에 대한 현행화 의무 부여(안 제3조의4제2항 및 제3항)

1) 입력 사항에 가축거래상인 현황 및 방역 점검 결과 추가 및 해당 정보의 변경 시 시스템에 즉시 현행화 하도록 지자체에 의무 부여

나. 지자체의 관할 농장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여부 확인 의무화(안 제7조의2)

1) 분기별 1회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여부를 확인하고,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정보를 관리대장 및 방역정보시스템에 수정하도록 함

다.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설에 따른 신고 등 세부 규정 마련(안 제7조의6, 제7조의7, 제7조의8, 제7조의9, 제7조의10, 제7조의11 및 제20조 제2항 및 제3항, 별표1의2, 별표 1의3, 별표 1의4 및 별표 1의5 신설)

1) 영업의 신고, 변경·휴업·폐업·재개업에 따른 신고, 소독·방제의 기준 및 기록, 행정처분 기준, 교육 및 의무 적용 대상에 대한 세부 내용 마련

라. 가축분뇨 수송차량의 세척·소독기준 구체화(안 제20조제1항 별표1의8)

1) 가축분뇨 운송업체는 시설내에서 반드시 세척 후 소독을 실시할 수 있는 세척·소독 시설의 기준을 구체화

마. 시설출입차량 관련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총괄기관과 교육운영기관 지정 및 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0조의6)

1) 검역본부장이 교육총괄기관을 지정하고, 교육총괄기관장은 각 지역별 교육운영기관을 지정하여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유사 교육을 기 이수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바. 지자체의 시설출입차량 직권말소에 관한 절차 규정(안 제20조의8 제4항 신설)

- 1) 차량의 소유자가 연락두절 등 자진 말소가 어려워 지자체가 직권 말소할 때 말소예정 사실에 대한 홈페이지 20일 이상 공고 등 절차 마련

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련 남은음식물 관리 강화(안 제20조의9 별표2의4)

-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로 사용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가축의 소유자의 준수사항을 추가

아. 개인정보 중 고속도로 통행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종류,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 및 제공 절차에 대하여 규정(안 제47조의2 신설)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우역, 우폐역,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 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농장의 소유자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는 필요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역학조사 반원에 제공 가능함

3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9. 3. 29.
- 마감일자 : 2019. 5. 8.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의2 개정(법률 제16121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농업농촌 공간정보 등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가.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안 제2조의14 신설)

- 1) (제·개정 주요내용)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사항 명시 및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관리를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고

시 제정 근거 마련

- 2) (제·개정 사유)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관리를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원활하게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함

32.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9. 3. 29.
- 마감일자 : 2019. 5. 8.

- 계란 내 살충제 검출 등과 같은 축산물 안전성 문제와 방역현장에서의 소독제 희석배수 미준수 등에 따른 방역조치 미흡 방지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사용기준 준수대상을 동물용의약외품과 가축전염병 방역 목적으로 투약하는 제제로 확대하고 동물용의약품 판매자에게 동물용의약품등의 거래현황 작성·보존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5891호, ‘18.12.11. 공포, ’ 19.6.12. 시행)됨에 따라, 동물용의약외품의 안전사용기준 설정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용의약품 판매자에게 동물용의약외품의 판매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시행 규칙에 법령 내용을 반영·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동물용의약품(의약품+의약외품)등 판매 시 판매기록 작성·보존 (안 제22조제3항)

- 1) 약사법 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외품에 해당되는 동물용 살충제·구충제(애완용 제외) 등도 판매기록 작성·보존(1년간) 대상 추가

나. 동물용의약품등으로 안전사용기준 준수대상 확대(안 제46조)

- 1) 약사법 개정에 따라 살충제·소독제 등 동물용의약외품과 방역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제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 설정 근거 마련

다. 동물용의약외품 판매기록 작성·보존 위반 시 행정처분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3 행정처분기준 개별기준 제56조의 2)

- 1) 약사법 개정으로 동물용의약외품까지 거래현황을 작성·보존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률의 완결성을 확보하고자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부과기준 마련

3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9. 3. 29.
- 마감일자 : 2019. 5. 8.
- 자산운용산업이 기업에 모험자본 등을 공급하는 한편, 투자자에게는 투자수익을 실현하게 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모투자 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최소 투자금액을 폐지하고,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의 교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집합투자재산 중 해외자산의 경우 전날의 가격을 당일의 기준가격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9. 3. 29.
- 마감일자 : 2019. 5. 8.
- 집합투자기구의 수시공시를 실효성이 있는 방법 위주로 개선하고, 연기수익자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한편, 집합투자재산에 편입된 유동화증권의 경우 기초자산의 발행인이 동일한 경우 등에도 동일종목으로 보아 분산투자 규제를 적용하고, 부동산개발신탁의 자금조달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투자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3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9. 4. 1.
- 마감일자 : 2019. 5. 11.
- 주요내용
 - 가. 국유림의 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현지에 소재한 임업인 단체” 추가(안 제11조)
 - 1) 법 제11조제1항에 “현지에 소재한 임업인 단체” 추가
 - 나.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 범위에 수목장림 및 광해방지시설 추가(안 제21조)
 - 1) 법 제21조제1항에 제11호 및 제12호 신설

36.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9. 4. 2.

• 마감일자 : 2019. 5. 13.

- 어항개발사업 관련 준용 규정을 최소화하고, 어촌개발사업 완료 시 별도로 준공확인 절차를 명확히 명시하도록 「어촌·어항법」이 개정('18.12)됨에 따라 준공확인 특례, 준공전 사용허가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기간이 「국유재산법」 등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과 같이 확대(3년 → 5년)됨에 따라 관련 규정도 동일한 기간으로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어항개발사업 완료 시 준공확인 특례 및 준공전 사용허가 등 세부 규정을 마련(안 제27조의3, 제27조의4)
- 나.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기간(5년)을 고려하여 어항관리청이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시 존치기간(3년 → 5년) 등 정비(안 제35조제2호)
- 다. 신고수리 간주 제도 도입 등으로 법률이 개정(' 18.12)됨에 따른 인용 조문의 항 변경 등 규정 정비, 타 법(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14.5)사항 반영 및 용어 순화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재정비(안 제12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7조, 제44조, 제46조 관련 별표)

37.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9. 4. 2.

• 마감일자 : 2019. 5. 13.

- 어항개발사업 관련 준용 규정을 최소화하고, 어촌개발사업 완료 시 별도로 준공확인 절차를 명확히 명시하도록 「어촌·어항법」이 개정('18.12)됨에 따라 준공확인 및 준공전 해당 시설 사용을 위한 서류제출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기간이 「국유재산법」 등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과 같이 확대(3년 → 5년)됨에 따라 관련 규정도 동일한 기간으로 정비하고, 변화된 어

업여건과 어항 이용 여건 등을 반영하여 어항의 지정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어항개발사업 완료 시 준공확인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준공보고서, 준공전 사용신고서 등 제출 규정 마련(안 제12조의3, 제12조의4)
- 나.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기간(5년)을 고려하여 어항관리청에서 어항시설의 사용·점용허가서 교부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토록 규정 정비(안 제20조제2항)
- 다. 변화된 어업여건(어선 대형화 등)과 어항 이용 여건(어선의 이용빈도, 방문객 등) 등을 반영하여 어항의 지정기준 재정비(안 제10조 관련 별표 1)
- 라. 신고수리 간주 제도 도입 등에 따른 해당 인용 조문의 항 추가·변경사항 반영에 필요한 규정 재정비(안 제13조, 제24조, 별지 제1호서식 ~ 제4호서식)

38.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9. 4. 2.
- 마감일자 : 2019. 5. 13.

-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축산물의 이물 발견사실 보고대상 영업자 등에 대한 내용으로 기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54호, '19.2.1.)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제15946호, 2018.12.11. 공포, 2019.6.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신설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4).

3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9. 4. 2.
- 마감일자 : 2019. 5. 13.
-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200호, 2019.1.8. 공포, 2019.7.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통계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수료 근거 조문 변경(농림축산식품부령 제288호, 2017.9.22. 공포·시행)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대상 인용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특별관리임산물의 통계조사 범위 및 방법 규정 (안 제25조의10)
 - 1) 특별관리임산물의 재배 및 생산현황, 유통·판매·소비 및 가격현황 등 통계조사 범위를 설정하고, 통계조사는 현지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청문·통계자료·문헌 등을 이용한 간접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방법을 규정함
 - 나. 규제 재검토 대상 인용 조문 변경 (안 제32조제7호)
 - 1)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적합성조사, 품질검사 등에 따른 수수료 근거 조문이 변경(농림축산식품부령 제288호, 2017.9.22.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인용 조문을 변경함

4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9. 4. 2.
- 마감일자 : 2019. 5. 13.
-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소년은 일정기간 소년원에서 교정교육을 받고 퇴원하나, 퇴원한 소년에 대한 재범여부 조사의 근거 규정이 없어 소년원 재범 방지 교육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어려움. 이에 소년원에서 교정교육을 받고 퇴원한 소년에 대해서 재범 등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처분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은 소년범죄예방정책 개선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

므로 퇴원한 소년에 대해 5년 동안 범죄·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41.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9. 4. 3.
 - 마감일자 : 2019. 5. 13.
- 학교의 장이 보건실 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 등에 위생용품을 추가하고,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배포 및 세부행동요령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보건실 내 용품비치 의무화(안 제2조제2항)
 - 1) 학교의 장이 보건실 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에 용품을 추가
 - 나.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관리방법 등(안 제3조제1항)
 - 1) 교육부장관이 마련해야 하는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는 각 기관별 임무 및 역할, 오염단계 전파, 실외수업 점검 등의 내용을 포함
 - 2) 교육부장관이 대기오염매뉴얼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파일이나 인쇄물의 형태로 배포
 - 다.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 따른 세부 행동요령 수립 등(안 제3조제3항)
 - 1) 학교의 장이 수립해야 하는 세부 행동요령에는 담당자별 행동요령, 대응단계별 전파요령 및 조치요령 별 세부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4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일자 : 2019. 4. 4.
 - 마감일자 : 2019. 5. 14.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의 적용 예외를 인정하는 대통령령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토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922호, 2018.12.11. 개정, 2019.6.12.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맹점 등록제한 예외를 적용받는 업종 및 소득기준 명시(제9조의15제2항 및 별표1의2 신설)

- 1) 기존 시행령 별표1에 명시하였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제한 예외 업종 및 소득기준을 제9조의15제2항 및 별표1의2를 신설하여 명시

나.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 현행화(별표1 개정)

- 1)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의 분류코드 및 업종 설명을 10차 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맞게 현행화

4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4. 4.

● 마감일자 : 2019. 5. 14.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18.12.18)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시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적용되는 공원시설을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어린이 공원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의3)

- 1) 어린이공원 내 주요지점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 주민과 관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

나. 공원조성계획 변경시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 (안 제13조제2호)

- 1)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설치할 수 있는 일정규모 이하(33㎡) 시설물(긴 의자 등 8종)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이동 또는 설치가 용이한 시설”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다. 과태료 규정 정비 (안 별표4)

- 1) 도시공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수단의 종류나 출입구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허용하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정해진 통행 구간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44. 수도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4. 5.
 - 마감일자 : 2019. 5. 15.
-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6082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45. 수도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4. 5.
 - 마감일자 : 2019. 5. 15.
-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 16082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절수등급 및 그 표시방법 등 법률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며, 수도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정수처리기준이 정수장 내 정수지까지의 소독능 확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소규모 정수장에는 동 기준 적용이 어려워 정수지가 아니라 배수지 유입지점까지의 소독능 확보가 되는 경우에도 정수처리기준 준수로 인정하고자 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 주요내용
- 가. 절수설비 중 대소변 구분형 변기에 대한 절수기준 개정
 - 나. 절수설비 등급구분 및 표시방법 신설
 - 다. 정수처리기준 준수방법으로 배수지 유입지점까지의 소독능 확보도 인정
 - 라. 정수장 내 탁도 검사방법을 개선하여 정수장 구조에 따라서는 적

용이 어려웠던 종전 방법의 문제 해결
마. 저수조 및 급수관 청소 후 수질검사 기준 개정

46.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9. 4. 5.

● 마감일자 : 2019. 5. 15.

- 수산업 관측사업 전담기관 지정의 근거 마련 및 전담기관의 운영 경비에 대한 출연금 또는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153호)」이 ‘18.12월 일부 개정되어, 시행일(’ 19.7.1) 이전에 하위법령을 미리 정비하고, 이력추적 표시로 인한 참여업체 부담(인력, 비용, 작업 시간 등) 완화를 위해 이력추적표시 방법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수산업관측 대상품목의 지정방식 개정(안 제35조제1항 개정)

- 1) 수산업관측 대상품목의 지정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사항을 해양수산부 훈령에 따라 지정하도록 자구 수정

나. 수산업관측 전담기관 지정 근거 마련(안 제35조제2항 개정)

- 1)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전담하도록 개정

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안 제35조제3항 개정)

-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수산업관측을 실시하는 자’를 ‘수산업관측전담기관’으로 자구 수정

라.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 지정방식 신설(안 제35조제4항 신설)

- 1)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해양수산부 훈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신설

마. 이력추적관리의 표시 방법 다양화(안 별표2 개정)

- 1) 이력추적관리 수산물의 표시사항을 ‘표지’, ‘이력추적번호’

에서 ‘표지’, ‘이력추적번호 및 QR코드’로 개정

47.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9. 4. 5.

• 마감일자 : 2019. 6. 4.

○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11호)」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지정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생용품의 종류에 문신용 염료를 추가(안 제2조, 별표 1)

1)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은 위생용품으로 관리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현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11호)」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의 종류에 추가하고자 함.

나. 문신용 염료를 보고 대상 제조·가공 품목으로 지정(안 제3조)

1)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위생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문신용 염료를 제조·가공하는 경우 영업자가 제품명 및 성분 등을 관할기관에 보고하도록 품목제조보고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자 함.

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기준 개정(안 별표 3)

1)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횟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48.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4. 5.

• 마감일자 : 2019. 5. 15.

○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 또는 사회적입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입원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후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의료기기(기술) 규제혁신을 위해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개정하며, 치료재료 허가·신고 등의 범위 초과시 승인 등의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874호, 2018.12.1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방문요양급여 사유를 규정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의무비율도 현행 50%에서 60%까지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요양급여를 적용받기 위해선 건강보험공단에 전산 등으로 신고토록 하는 규정 신설
- 나. 현재 방문의료 수가가 시범 적용되는 중증환자와 일반적인 거동 불편자도 건보 수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방문요양급여 사유 마련
- 다. 요양급여·비급여대상 확인결과 기존 급여항목과 유사하나 수가를 달리 검토할 필요한 있는 경우 요양급여 조정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 라.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혁신의료기술에 대해 요양급여 결정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마.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시 요양급여 등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시 신의료기술평가-요양급여 등재평가를 동시 진행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 바. 혁신의료기술 신청 시 등에 치료재료도 등재 결정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 사. 감염병 방지 등을 위해 직권으로 요양급여여부 결정할 수 있는

준용 조항 변경

- 아.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시 승인 등 절차 규정
- 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4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4. 5.
- 마감일자 : 2019. 5. 15.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이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률을 책정하고, 체납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고,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874호, 2018.12.11. 공포, 법률 제16238호, 2019.1.15. 공포)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제때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막고자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본인부담상한 적용 대상에서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제외
 - 나. 급여제한 제외 대상에 대한 소득·재산 기준 마련
 - 다. 건강보험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 라.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 시기 고시 위임 근거 마련 등
 - 마.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까지 확대하고 이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률을 책정
 - 바. 제공 요청 자료에 국적법에 따른 국적상실·국적취득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

5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4. 5.
 - 마감일자 : 2019. 5. 15.
- 요양병원 입원 중 진료의뢰 없이 임의로 타 요양기관 진료받는 경우 전액본인부담 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급여비 지출을 줄이고, 건강보험증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할 경우에 발급하고, 보험료 납입 고지를 할 때 자격 변동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874호, 2018.12.11. 공포, 법률 제16238호, 2019.1.15. 공포)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제때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자격 취득 변동 후 보험료 납입고지 시 알려야 항목 명시
 - 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건강보험증 발급
 - 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방법 및 요건
 - 라. 외국인 급여제한자 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 수가 적용
 - 마.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가 임의로 타 요양기관에서 진료시 전액 본인부담 하도록 규정
 - 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요양비 및 보장구 서식 개정

51.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9. 4. 5.
 - 마감일자 : 2019. 5. 15.
-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높이고 국민의 등기제도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변호사·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할 때 위임인과 등기신청의사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며, 등기정보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정비·개선하려는 것임

5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

- 예고일자 : 2019. 4. 5.
 - 마감일자 : 2019. 5. 17.
- 문화재수리기술(능)자 자격증,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불법으로 대여하는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 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 규정 신설
 - 1) 수리기술자 자격증 대여 알선 행위 금지(안 제10조)
 - 2) 수리업자 등록증·등록수첩 대여 알선 행위 금지(안 제21조)
 - 나. 자격증 등 대여 및 알선행위 처벌 규정 정비(안 제58조 및 제59조)
 - 1) 자격증, 등록증 등 대여 알선했던 자에 대한 벌칙 신설
 - 2) 기존 벌칙을 정비하여 자격증, 등록증 등 대여 행위 구체화

5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9. 4. 5.
 - 마감일자 : 2019. 5. 15.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표하도록 법률이 개정(법률 제16074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공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감증명 제출요구 규정 감축계획(’ 18.4.)’에 따라 법규 및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를 감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공표 및 통보 규정 신설(안 제1조의 2 신설)
- 1)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1개월 이내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표하고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 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공표절차를 마련함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나.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의 지위 승계 시 필요한 제출서류 정비(안 제5조제1항2조 개정)

- 1)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토록 하던 것을 양도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만 제출토록 함
- 2) 인증사업자의 지위 양도·양수 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를 감축하여 국민의 불편 및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5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4. 5.
- 마감일자 : 2019. 5. 15.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고, 발주청에도 시공단계에서의 건설사업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시공을 도모하는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135호, 2018. 12. 31. 공포)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및 심의·변경 대상 공사 등을 규정하고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과 제출·승인의 방법 및 절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및 절차,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의 적정성 검토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많은 안전사고가 소규모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인·허가기관·발주청 등에서 소규모 건설공사현장도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4. 5.
- 마감일자 : 2019. 5. 15.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고, 발주청에도 시공단계에서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135호, 2018. 12. 31. 공포)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건설기술인이 건

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
한 내용을 빠뜨린 경우에 대한 업무정지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5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9. 4. 5.
 - 마감일자 : 2019. 5. 15.
- 올해 하반기 개원 예정인 국립괴산호국원의 위치를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4길로 정하는 한편, 그동안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본인이 사망한 후 유족이 안장신청을 했던 것을 생전(生前)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294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됨에 따라 안장대상자 본인이 생전(生前)에 안장대상 여부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연령 및 구체적인 절차 등을 정하고, 순직공무원 등의 안장대상자 선정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9. 4. 5.
 - 마감일자 : 2019. 5. 15.
- 현장실습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직업교육훈련 및 현장실습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5960호, 2018. 12. 18. 공포 2019. 6. 19. 시행)됨에 따라, 현장실습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현장실습 실태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안 제5조)
- 1)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현장실습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파악 및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졌음
 - 2) 이에 현장실습 관련 현황, 관계자 만족도 등 현장실습 실태조사

- 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음
- 3) 현장실습 실태조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토대로 안전하고 내실 있는 직업교육훈련 및 현장실습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